



Department of  
Education

## 교육감 규정

번호: D-150

제목: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및 뉴욕시 75 학군 교육위원회 구성원 선출 절차

항목: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발행: 2021년 4월 29일

###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21년 1월 28일자 교육감 규정 D-150을 갱신하고 대체합니다.

#### 변경 내용:

- 기존의 유자격 학생 1인당 1표를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유자격 학생 1인당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규정 변경(섹션 I.E.1.b 및 II.F.1.b).



## 교육감 규정

번호: D-150

제목: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및 뉴욕시 75 학군 교육위원회 구성원 선출 절차

항목: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발행: 2021년 4월 29일

### 요약

본 규정은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CCSE”) 및 75학군 위원회(“D75 Council”)에 대한 자격 요건과 추천 및 선출 /선거 절차를 명시하며 75학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또한 공식 총원 절차를 제공합니다.

#### I.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 A. 구성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는 투표권이 있는 11 명의 위원 및 투표권이 없는 1 명의 학생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위원 중 9 명은 반드시 본 규정서에서 제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며, 나머지 2 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관 (Public Advocate)이 임명합니다. 학생 위원은 뉴욕시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실(“OSE”)에서 임명합니다.

##### B. 자격

###### 1. 학부모 위원

- a. CCSE 의 모든 학부모 위원은 IEP 학생의 부모여야 합니다.
- b. 학부모란 부모(출산 또는 입양,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법률적인 보호자 또는 아이와 부모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으로 정의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 c. 현재 교육청(“DOE”)에서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모든 IEP 학생의 부모는 CCSE 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d. 후보 자격은 부모가 CCSE 에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e. 신청서 제출 시점에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IEP 를 갖고 있어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자녀가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IEP 를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봉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f.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2. 공익 옹호관 임명인

- a. 공익옹호관이 임명하는 두 위원들은 반드시 장애인의 교육, 훈련 또는 고용 관련 분야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DOE 학교들의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 b. 공익 옹호관 임명 CCSE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DOE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실("FACE")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FACE 에 이메일 cceinfo@schools.nyc.gov 로 제출하면 됩니다. FACE 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공익옹호관실로 보낼 것입니다. 최종 임명은 공익 옹호관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3. 학생 위원(투표권 없음)

- a. 위원회에서 봉사할 해에 12 학년이 되는 IEP 고등학생들은 특수교육 담당실("OSE")에 의해 임명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30 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씨니어(12 학년)로 간주합니다.
- b. 관심 있는 학생은 반드시 FACE 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FACE 에 이메일 cceinfo@schools.nyc.gov 로 제출 하십시오. FACE 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OSE 로 보낼 것입니다. 최종 임명은 OSE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의 임기는 7 월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1 년입니다.

## 4.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

- a.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 i.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당의 선출 또는 임명 보직(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에 있는 사람
  - ii. 현재 뉴욕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 iii. 다른 뉴욕시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교육위원회("CEC")에 소속된 사람
  - iv. 교육 정책 패널 위원.
  - v.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또는 타이틀 I 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협회, 팀,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
  - vi. 교육청 윤리 담당관 또는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b. 다음의 경우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i. CEC 또는 뉴욕시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정 행위에 가담한 자.
  - ii. 뉴욕주 교정법 제 23-A 항에 의거, 고려될 수 있는 제공된 유죄 범죄 판결을 받은 자.

### C. CCSE 출마

1. FACE 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 월부터 지원서 제출과 투표 타임라인을 포함한 선거 절차를 발표할 것입니다.
2. CCSE 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심있는 학부모님들은 뉴욕시 학교 계정 ("NYCSA")지원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교장에게 학교나 학군 오피스 컴퓨터 사용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며, 전화 311 로 문의하시면 공립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3. 후보들은 지원서에서 DOE 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의 모든 자녀들을 본인의 NYCSA 계정에 링크하였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CCSE 에 지원하는 후보는 IEP 가 있는 자녀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군의 대표로 고려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학군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자격박탈 사유가 됩니다.
4. 후보는 자격이 되는 모든 학군 및/또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으나, 선출될 경우 오직 한 군데에서만 봉사해야 합니다. 다수의 위원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호도에 따라 각 위원회의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한 군데 이상 교육위원회에 선출될 경우, 가장 높은 순위로 기재한 교육위원회에 임명됩니다.

D. 후보 포럼

1. FACE 에서는 최소 1 회의 후보 포럼을 개최하여 각 후보들이 학부모 및 기타 교육위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인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후보자 포럼은 반드시 지원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그러나 선거 기간 전에 실시되며, 이 선거기간은 반드시 선거가 있는 해의 5 월 두 번째 화요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3. 후보 포럼은 실제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FACE 에서는 각 후보 포럼 날짜와 시간, 포맷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면 포럼이 실시될 경우, FACE 에서는 장애인 접근이 편리한 ADA 준수 장소를 확보하고, DOE 장소들에 대한 모든 필요한 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비용을 책임질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포럼이 실시될 경우, FACE 에서는 해당 플랫폼 비용을 지불하고 회의 중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4. 각 후보 포럼에 앞서 FACE 에서는 각 후보들의 지원서에서 성명, 자녀(들)의 학교(들) 및 프로그램들, 그리고 후보 성명서 등의 부분(일명 "후보 프로필")을 일반이 볼 수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후보 프로필은 학부모님들과 일반 대중이 볼 수 있게 DOE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FACE 에서는 또한 대면으로 실시되는 후보 포럼에서 후보 프로필 사본을 배부할 것입니다.

E. 선거 절차

1. 투표권자

- a.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고, DOE 학교에 재학 중인 IEP 학생의 부모는 CCSE 위원 선서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b. 유자격 학생 1 인당 3 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

- a. 학부모님들은 NYCSA 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 b.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교장에게 학교나 학군 오피스 컴퓨터를 사용해 NYCSA 계정을 만들고 투표할 수 있게 주선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며, 전화 311 로 문의하시면 공립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 c. 또한 학군장(수퍼인텐던트) 사무실에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에서 학부모를 대신하여 NYCSA 계정을 만들어 학부모의 투표를 입력한다면, 수퍼인텐던트 오피스에서는 반드시 학부모가 선택한 후보가 표시된 종이 투표용지(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수퍼인텐던트 오피스가 학부모 대신 NYCSA 계정을 만들어 투표용지의 내용을 입력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 그리고 수퍼인텐던트 오피스가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부모의 투표를 입력하였다는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3. 취임하는 후보들

- a. CCSE 의 투표권이 있는 9 명의 선출된 위원 중, 2 명은 반드시 75 학군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75 학군 부모")여야 합니다. 나머지 7 석은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나아가 75 학군은 CCSE 에 2 명 이상의 대표를 둘 수 없으며, 유일한 예외는 CCSE 에 75 학군 외의 모든 기타 학군에서 1 인 이상의 대표를 둘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위원들이 모두 총원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b.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 i.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7 명의 후보가 조건부로 의석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보 중 75 학군 부모가 2 명 이상 있을 경우 최다 득표한 75 학군 부모 2 인이 선출되고 그보다 적은 표를 얻은 75 학군 부모는 탈락되며,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같은 수의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됩니다.
  - ii. 75 학군 부모를 제외한 기타 모든 후보를 제외한 뒤 최다득표 후보 7 명 중에 동일 학군(75 학군 외)에서 복수의 후보가 있을 경우,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고 같은 학군에서 적게 득표한 후보는 탈락하며, 그 다음 득표자 중 CCSE 에 아직 대표를 보내지 못한 다른 학군의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될 것입니다.
  - iii. 동일 학군(들) 차점 투표자들을 제외하고도 7 명의 후보에 75 학군 부모 2 명이 포함되었다면, 이미 조건부 선출 된 7 명의 후보와 같은 학군이 아닌 후보 중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2 명의 후보가 CCEC 의 남은 2 석을 총원하기 위해 조건부 선출됩니다.

- iv. 동일 학군(들) 차점 투표자들을 제외하고 선출된 7 명의 후보에 75 학군 부모 2 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최다 득표한 75 학군 학부모 2 인이 조건부 선출됩니다.

#### 4. 재투표

- a. 재투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치러집니다:
  - i. 두 명 또는 다수 후보의 득표가 동일한 경우
  - ii. 75 학군 학부모 2 명 미만이 한 표도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
  - iii. 각기 다른 학군에서 선출된 후보들로 CCSE 을 구성하고도 총원되지 않았을 경우
- b. 두 명, 또는 다수의 후보가 동일 득표를 한 경우, 비긴 후보들로만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 c. 득표한 75 학군 학부모가 2 인 미만이어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75 학군 학부모 후보들만 75 학군 위원 자리를 놓고 재투표에 나가게 됩니다.
- d. CCSE 에 이미 대표를 낸 학군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후보들을 제외하고도 공석이 발생하여 재투표를 실시해야 할 경우, 아직 조건부로 선출되지 않은 후보로서 대표를 내지 못한 학군에 자녀가 재학 중인 후보들로만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재투표를 통해서도 모든 위원직이 총원되지 않을 경우, 한 학군(75 학군 외)에서 CCSE 대표를 한 명 이상 낼 수 없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 재투표 결과가 동점이 되는 경우, DOE 선거 절차를 대행하는 독립 기관에서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 f. 상기 재투표 절차를 통해서도 모든 위원직이 총원되지 않거나 75 학군에서 CCSE 에 2 인의 대표를 내지 못한 경우, 위원회에 공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 규정 섹션 II.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공석을 채우도록 합니다.

#### F. 선출 후 조건/자격 검토

- 1. 후보자의 조건부 선출 이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FACE에서는 당선자가 CCSE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FACE 에서 어떤 당선자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FACE에서는 자격미달 사유와 법적 근거를 포함한 결정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FACE에서 자격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후보자는 CCSE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군에서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2. 선출된 후보자가 선출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그리고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다면, 최초의 투표에서 CCSE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군에서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될 것입니다.
3. 무자격 또는 자격을 박탈당한 후보가 75학군 몫으로 할당된 의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후보인 경우, 최초 선거 절차에서 차점 득표자인 75학군 학부모 후보자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만약 본 섹션에 명시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는데 동점이 되는 경우, DOE 선거 절차를 대행하는 독립 기관에서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5. 만약 선출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는 경우, 본 규정 섹션.II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둡니다.

#### G. 처리 시간:

1. CCSE 는 매 2 년마다, 홀수 연도에 실시됩니다. 재투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표는 5 월 둘째 화요일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2. 선거 절차는 선거가 있는 해의 1 월에 시작되며, FACE 에서 CCSE 의 역할과 기능, 활동 및 후보 정보와 지원 및 투표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합니다.
3. CCSE 위원 임기는 선거 후 7 월 1 일부터 시작되어 2 년 후 6 월 30 일까지 지속됩니다. 모든 CCSE 위원은 임기 시작 전에 FACE 에서 마련한 오리엔테이션이 참가해야 하며, 임기 2 년차에 최소 1 회의 추가 연수에 참가해야 합니다.

#### H. 사퇴

##### 1.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의 사직은 FACE 에 서면으로 이메일 주소 [ceecinfo@schools.nyc.gov](mailto:ceecinfo@schools.nyc.gov) 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임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FACE 에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FACE 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임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2. 공익 옹호관 임명인

공익 옹호관 임명인의 사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Public Advocate 에 보내야 하며, 사본을 FACE 에 이메일 ccecinfo@schools.nyc.gov 로 보내십시오. 사임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Public Advocate 에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공익 옹호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3. 학생 위원

학생 위원의 사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OSE 에 보내야 하며, 사본을 FACE 에 ccecinfo@schools.nyc.gov 로 보내십시오. 이러한 사임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OSE 에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OSE 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임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I. 공석 안내

1. 학부모 위원 및 공익 옹호관 지명 위원의 공석

a. 임기 중 사전에 적절하게 공지된 정기 CCSE 월례 회의에 서면상의 유효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3 회 불참하거나 참석을 거부한 CCSE 위원은 본인의 위원직을 비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i.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ii. 유효한 불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CCSE 위원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의무적인 법원 출석, 군인의 의무, CCSE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CCSE 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 그 밖의 다른 사유는 회의 불참 후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CCSE 에 제출되고 정족수가 참석한 다음 정기 월례회의에서 CCSE 에 의해 승인 표결이 되었을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iii. 적절한 사유 없이 3 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CCSE 는 정기 회의에서 공석 발생을 결의하고 FACE 에 이런 상황을 통보합니다. 공익옹호관 임명 위원회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CCSE 에서는 Public Advocate 에도 통보합니다.
- b. 학부모 위원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CCSE 는 공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잔여 임기 동안의 공석을 채워야 합니다.
  - i. CCSE 에서는 공석을 널리 알리고 지원 절차와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공고할 것입니다.
  - ii.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FACE 에서 CCSE 공석 입후보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다시 FACE 에 제출해야 합니다. FACE 에서는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유자격 후보들의 지원서 일부를 CCSE 에 보낼 것입니다.
  - iii. 만일 공석이 현 75 학군 학부모 위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CCSE 위원 중에 현 75 학군 학부모가 없다면, 공석 총원 후보는 현재 75 학군 학부모들만 가능합니다.
  - iv. IEP 학생 부모들은 총원 전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하고 CCSE 와 의논할 기회가 있습니다.
- c. 만약 후보간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 일 내에 CCSE 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 투표로 위원을 결정합니다. CCSE 에서 기타 이유로 60 일 이내에 공석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감이 CCSE 에 공석 총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 d. 공익 옹호실에서 임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봉사할 위원을 임명합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반드시 FACE 에서 CCSE 공익옹호관 임명자 공석 입후보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다시 FACE 에 제출해야 합니다. FACE 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공익옹호관실로 보낼 것입니다. 최종 임명은 공익 옹호관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2.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OSE 가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자격이 있는 IEP 학생 중 다른 12 학년 학생을 지명합니다.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도 담당관은 FACE 및 CCSE 에 자신의 지명에 대해 알리도록 합니다.

## II. 제 75 학군 위원회

뉴욕시 전체의 75 학군 학교 및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대표할 뉴욕시 75 학군 위원회 ("D75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 A. 의무와 책임

1. 75 학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 a. 75 학군 교육 규정과 관련된 교습 및 지도 정책에 대한 조언과 의견 제시;
  - b. DOE 가 75 학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례 보고서 발표 및 적절한 경우 이런 교육의 효율성과 전달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천; 및
  - c. 최소 월 1 회 이상 일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75 학군 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현안에 관해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 75 학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비서를 고용, 감독, 평가 및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a. 회의 공지, 안건 및 기록 준비;
  - b. 의사록 및 기타 75 학군 위원회 회의 기록과 유지 및
  - c. 회의를 위한 간단한 보고 자료와 기타 관련 정보 취합 준비.

### B. 구성

D75 위원회는 11 인의 투표권 있는 위원들과 1 명의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위원 중 9 명은 반드시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75 학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며, 나머지 2 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관 (Public Advocate)이 임명합니다. 학생 위원은 75 학군 수퍼인텐던트가 임명합니다.

### C. 자격

1. 학부모 위원:
  - a. 75 학군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들은 75 학군 위원회 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 b. 학부모란 부모(출산 또는 입양,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법률적인 보호자 또는 아이와 부모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으로 정의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 c. 후보 자격은 부모가 75 학군 위원회에서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d.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중 75 학군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던 자녀가 더 이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75 학군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부모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공익 옹호관 임명인
- a. 공익옹호관이 임명하는 두 위원들은 반드시 장애인의 교육, 훈련 또는 고용 관련 분야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DOE 학교들의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 b. 공익 옹호관 임명 D75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FACE 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FACE 에 이메일 [cceinfo@schools.nyc.gov](mailto:cceinfo@schools.nyc.gov) 로 제출하면 됩니다. FACE 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공익옹호관실로 보낼 것입니다. 최종 임명은 공익 옹호관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3. 학생 위원(투표권 없음)
- a. 위원회에서 봉사할 해에 12 학년이 되는 75 학군 고등학생들은 75 학군 위원회 수퍼인텐던트에 의해 임명될 자격이 있습니다. 본 규정서에서는 30 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12 학년으로 간주합니다.
  - b. 관심 있는 학생은 반드시 FACE 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FACE 에 이메일 [cceinfo@schools.nyc.gov](mailto:cceinfo@schools.nyc.gov) 로 제출 하십시오. FACE 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75 학군장에게 보낼 것입니다. 최종 임명은 75 학군장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c.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의 임기는 7 월 1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1년입니다.

4.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

a.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 i.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당의 선출 또는 임명 보직(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회회의 의원 또는 대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에 있는 사람
- ii. 현재 뉴욕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 iii. 다른 뉴욕시 위원회 또는 기타 CEC 에 소속된 사람
- iv. 교육 정책 패널 위원.
- v. 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또는 타이틀 I 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협회, 팀, 위원회 또는 이사회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
- vi. 교육청 윤리 담당관 또는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b. 다음의 경우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i. CEC 또는 뉴욕시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정 행위에 가담한 자.
- ii. 뉴욕주 교정법 제 23-A 항에 의거, 고려될 수 있는 제공된 유죄 범죄 판결을 받은 자.

#### D. 75 학군 위원회 후보 출마

1. FACE 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 월부터 지원서 제출과 투표 타임라인을 포함한 선거 절차를 발표할 것입니다.
2. 75 학군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심있는 학부모님들은 NYCSA 지원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교장에게 학교나 학군 오피스 컴퓨터 사용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며, 전화 311 로 문의하시면 공립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3. 후보들은 지원서에서 DOE 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의 모든 자녀들을 본인의 NYCSA 계정에 링크하였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D75 지원하는 후보는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각 75 학군 학교 대표로 고려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75 학군 학교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자격박탈 사유가 됩니다.
4. 후보는 자격이 되는 모든 학군 및/또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으나, 선출될 경우 오직 한 군데에서만 봉사해야 합니다. 다수의 위원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호도에 따라 각 위원회의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한 군데 이상 교육위원회에 선출될 경우, 가장 높은 순위로 기재한 교육위원회에 임명됩니다.

E. 후보 포럼

1. 75 학군 회장 위원회는 서로 협의하여, 그리고 FACE 에서의 지원을 받아 후보 포럼을 개최하여 후보들이 학부모 및 기타 관심 있는 대중에게 본인을 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2. 후보 포럼은 반드시 지원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그러나 선거 기간 전에 실시되며, 이 선거기간은 반드시 선거가 있는 해의 5 월 두 번째 화요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3. 후보 포럼은 실제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75 학군 회장위원회는 FACE 와 협의하여 후보 포럼 날짜와 시간, 포맷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면 포럼이 실시될 경우, FACE 에서는 장애인 접근이 편리한 ADA 준수 장소를 확보하고, DOE 장소들에 대한 모든 필요한 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비용을 책임질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포럼이 실시될 경우, FACE 에서는 해당 플랫폼 비용을 지불하고 회의 중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4. 각 후보 포럼에 앞서 FACE 에서는 각 후보들의 지원서에서 성명, 자녀(들)의 학교(들) 및 프로그램들, 그리고 후보 성명서 등의 부분(일명 "후보 프로필")을 일반이 볼 수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후보 프로필은 학부모님들과 일반 대중이 볼 수 있게 DOE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FACE 에서는 또한 대면으로 실시되는 후보 포럼에서 후보 프로필 사본을 배부할 것입니다.

F. 선거 절차

1. 투표권자
  - a. 75 학군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서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들은 75 학군 위원회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b. 유자격 학생 1인당 3 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
  - a. 학부모님들은 NYCSA 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할 것이 권장됩니다.

- b.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교장에게 학교나 학군 오피스 컴퓨터를 사용해 NYCSA 계정을 만들고 투표할 수 있게 주선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며, 전화 311로 문의하시면 공립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 c. 또한 학군장(수퍼인텐던트) 사무실에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에서 학부모를 대신하여 NYCSA 계정을 만들어 학부모의 투표를 입력한다면, 수퍼인텐던트 오피스에서는 반드시 학부모가 선택한 후보가 표시된 종이 투표용지(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수퍼인텐던트 오피스가 학부모 대신 NYCSA 계정을 만들어 투표용지의 내용을 입력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 그리고 수퍼인텐던트 오피스가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부모의 투표를 입력하였다는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3. 취임하는 후보들

- a. D75 위원회의 9개 선출직 위원은 유자격 학부모 누구나 채워도 됩니다. 모든 의석을 채우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D75 위원회에 어떤 학교도 1명 이상의 대표를 둘 수 없습니다.
- b. 표를 집계할 때에는, 최다 득표자 9명의 후보가 조건부로 위원직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9명의 후보 중 같은 학교에서 한 명 이상이 있을 때에는 득표가 더 많은 후보가 위원으로 선택되며, 동일 학교에서 득표가 적은 후보가 탈락됩니다. 그리고 75 학군 위원회에 아직 대표를 보내지 못한 다른 학교를 대표하는 그 다음 득표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될 것입니다.

### 4. 재투표

- a. 재투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치러집니다:
  - i. 두 명 또는 다수의 후보가 동일 득표한 경우
  - ii. 각기 다른 학교 후보들로 D75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완전히 총원되지 않았을 경우
- b. 두 명, 또는 다수의 후보가 동일 득표를 한 경우, 비긴 후보들로만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 c. 75 학군 위원회에 이미 대표를 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후보들을 제외하고도 공석이 발생하여 재투표를 실시해야 할 경우, 아직 조건부로 선출되지 않은 후보로서 대표를 내지 못한 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후보들로만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재투표를 통해서도 모든 위원직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한 학교에서 D75 위원회에 대표를 한 명 이상 낼 수 없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d. 재투표 결과가 동점이 되는 경우, DOE 선거 절차를 대행하는 독립 기관에서 추천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 e. 상기 재투표 절차를 통해서도 모든 위원직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공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 규정 섹션 II.J 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공석을 채우도록 합니다.

#### G. 선출 후 조건/자격 검토

1. 후보자의 조건부 선출 이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FACE 에서는 당선자가 75 학군 위원회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FACE 에서 어떤 당선자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FACE 에서는 자격미달 사유와 법적 근거를 포함한 결정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FACE 에서 자격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후보자는 D75 위원회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서 차점 득표자 후보로 대체될 것입니다.
2. 선출된 후보자가 선출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그리고 선거가 실시된 해의 6 월 30 일이나 그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다면, 최초의 투표에서 D75 위원회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서 차점 득표자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될 것입니다.
3. 만약 본 섹션에 명시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는데 동점이 되는 경우, DOE 선거 절차를 대행하는 독립 기관에서 추천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4. 만약 선출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는 경우, 본 규정 섹션 II.J 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둡니다.

#### H. 처리 시간:

1. 75 학군 위원회 선거는 매 2 년마다, 홀수 연도에 실시됩니다. 재투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표는 5 월 둘째 화요일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2. 선거 절차는 선거가 있는 해의 1월에 시작되며, FACE 에서 75 학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활동 및 후보 정보와 지원 및 투표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합니다.
3. 75 학군 위원 임기는 선거 후 7 월 1일부터 시작되어 2 년 후 6 월 30 일까지 지속됩니다. 모든 75 학군 위원은 임기 시작 전에 FACE 에서 마련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야 하며, 임기 2 년차에 최소 1 회의 추가 연수에 참가해야 합니다.

I. 사퇴

1.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의 사직은 FACE 에 서면으로 이메일 주소 [cceinfo@schools.nyc.gov](mailto:cceinfo@schools.nyc.gov) 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임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FACE 에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FACE 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임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2. 공익 옹호관 임명인

공익 옹호관 임명인의 사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Public Advocate 에 보내야 하며, 사본을 FACE 에 이메일 [cceinfo@schools.nyc.gov](mailto:cceinfo@schools.nyc.gov) 로 보내십시오. 사임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Public Advocate 에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공익 옹호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3. 학생 위원

학생 위원의 사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75 학군 수퍼인텐던트에게 보내야 하며, 사본을 FACE 에 [cceinfo@schools.nyc.gov](mailto:cceinfo@schools.nyc.gov) 로 보내야 합니다. 사임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75 학군 수퍼인텐던트에게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75 학군 수퍼인텐던트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J. 공석 안내

1. 학부모 위원 및 공익 옹호관 지명 위원의 공석

a. 임기 중 사전에 적절하게 공지된 정기 75 학군 위원회 월례 회의에 서면상의 유효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3 회 불참하거나 참석을 거부한 75 학군 위원은 본인의 위원직을 비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i.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ii. 유효한 불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75 학군 위원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의무적인 법원 출석, 군인의 의무, 75 학군 위원회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75 학군 위원회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 그 밖의 다른 사유는 회의 불참 후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75 학군 위원회에 제출되고 정족수가 참석한 다음 정기 월레회의에서 75 학군 위원회에 의해 승인 표결이 되었을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iii. 적절한 사유 없이 3 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75 학군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서 공석 발생을 결의하고 FACE 에 이런 상황을 통보합니다. 공익옹호관(Public Advocate) 임명 위원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75 학군 위원회에서는 Public Advocate 에도 통보합니다.
- b. 학부모 위원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75 학군 위원회는 공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잔여 임기 동안의 공석을 채워야 합니다.
- i. 75 학군 위원회에서는 공석을 널리 알리고 지원 절차와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공고할 것입니다.
  - ii.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FACE 에서 75 학군 위원회 공석 입후보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다시 FACE 에 제출해야 합니다. FACE 에서는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유자격 후보들의 지원서 일부를 75 학군 위원회에 보낼 것입니다.
  - iii. 75 학군 위원회 및 기타 관심을 가진 교육 그룹은 총원 전 추천을 서면으로 표명하고 75 학군 위원회와 논의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c. 만약 후보간에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 일 내에 75 학군 위원회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합니다. 75 학군 위원회에서 기타 이유로 60 일 이내에 공석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감이 75 학군 위원회에 공석 총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 d. 공익 옹호실에서 임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봉사할 위원을 임명합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반드시 FACE 에서 75 학군 위원회 공익 옹호관 임명자 공석 입후보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다시 FACE 에 제출해야 합니다. FACE 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공익옹호관실로 보낼 것입니다. 최종 임명은 공익 옹호관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2.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75 학군 수퍼인텐던트가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자격이 있는 75 학군 12 학년 학생 중 다른 학생을 지명합니다. 75 학군 수퍼인텐던트는 FACE 및 75 학군 위원회에 지명 내용을 통보합니다.

### III. 이의제기 절차

본 규정의 준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지 5 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게 된 특정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IV. 기술적 지원

FACE 에서 본 규정에 포함된 절차의 실행에 관해 총괄하며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규정 관련 문의 연락처: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담당실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409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4118

이메일: [CCECinfo@schools.nyc.gov](mailto:CCECinfo@schools.nyc.gov)